

관리 효율화 위한 최선의 방법

전담기구 신설해야

어항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여 이곳에서 전적으로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어항관리공단'을 설립한다든지 이게 어려우면 어항관련 민간기구 업무에 위탁하면 어항관리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항협회〉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88년 전국 해역별 어민을 대상으로 1·3종 어항관리에 관한 표본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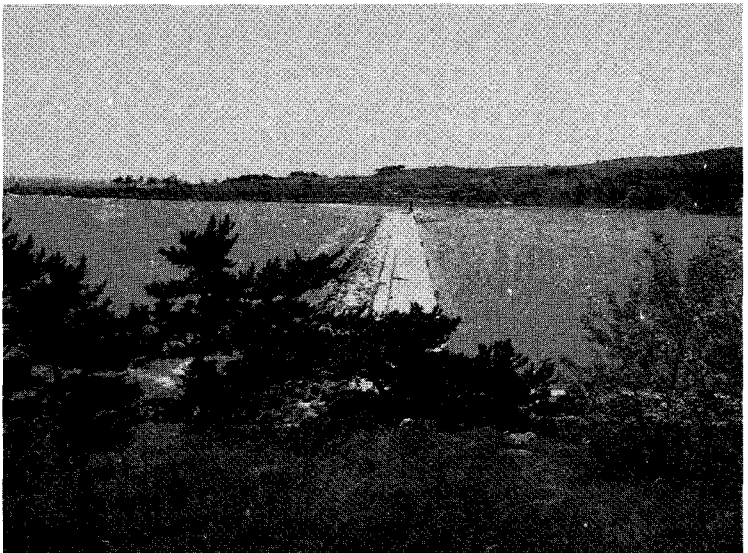
이에 따르면 어항의 실제 관리자가 수산청장, 도지사, 시장군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45.9%,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7%였고 정답에 해당하는 수협조합장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단지 23.7%에 불과해 큰 충격을 준 바 있었다.

쉽게 말해 10명 가운데 8명 정도는 어항을 본인 스스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유지 보수의 책임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다.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정확한 조사를 다

시 해보지 않았기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나 유감스럽게도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다는 게 많은 어항인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어항은 어민의 생업의 터전이자 지역사회발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어항이 관리에 관한한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하게 방치되는 것은 우리나라 어항 발전에 큰 허점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어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인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

주지하다시피 어항은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는 동시에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보호시설이다. 이와함께 어업생산활동에 필요한 각종 생산요소를 원활하게 공급해 주는 보급기지일 뿐만 아니라 생산된 수산물을 소비지로 연결시켜 주는 유통 및 가공기지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어항은 해상교통의 중심지로서, 또는 쾌적한 휴식 휴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행관리제도 합리적 개선 필요

그런데 현행 어항법에 의하면 1·3종 어항은 수산청장이, 2종 어항은 시도지사가 각각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수산시설관리규정상 제1·3종 어항을

해상 지역의 지구별수협 조합장을 관리대행자로 지정, 세부적인 사항의 관리를 대행케 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수협에 어항관리를 대행시키고 있는 이유는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조직을 갖추고 있고, 실제 이용자가 대부분 조합원들이므로 어항관리에 용이한 점이 많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규정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협은 본래 생산자단체로서 어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수협으로 하여금 어항관리를 대행케 하는 것은 수협으로 보나, 이를 이용하는 어민들로 보나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어항관리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며 또 수협은 나름대로의 고유업무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현행 어항법에 의하면 수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항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어항이용료의 징수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물론 그 근거는 어항법 시행령에 두고 있긴 하지만 수협이 실제 이용자인 동시에 실제 관리대행자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바 크다 하겠다.

이렇게 어항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어항시설이 손괴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신속하고 즉각적인 보수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항시설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하려 해도 확보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항기능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93년처럼 어항부문에 산이 올해보다 오히려 감축되었을 때는 한마디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정부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한 어민이나 수협이 어항의 유지보수비를 선뜻 염출해 내기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어항관리를 위한 또 한가지의 방법은 수산청의 기구를 전면 확대 개편해 어항관리 운영을 전적으로 떠맡기는 것이다. 최근 수산청이 해역별 어항사무소를 설치한 것도 따지고 보면 어떤 의미로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시도한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항만의 경우 현장 주재하에 이용 통제를 하고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그리 용이치 않은 일이다. 정부 기구의 확대 개편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려는 최근의 경향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주요 업무를 하부나 기타 단체에 이양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국가예산도 그렇게 쉽게 확보할 수 없는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조건 아래 어항관리를 과연 누가 맡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결론부터 먼저 말한다면 어항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여 이곳에서 전적으로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어항관리공단'을 설립한다든지 이게 어려우면 어항관련 민간기구에 업무를 위탁하면 어항관리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기구는 어선협회와 같은 특수법인이 될 수도 있고 컨테이너부두공단같은 기능위주의 기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도로공사와 같은 공사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단지 현재 우리의 어항이 처한 현실을 감안해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그 성격을 구분지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같은 어항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우선 어항관리에 관한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오늘날 경제 사회의 발전에 따라 모든 직능이 한층 다양화, 전문화 되어 가는 것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명백한

추세이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의 행정기능 역시 종래의 포괄적 기능에서 개괄적 기능으로 세분화, 축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항분야만을 국한시켜 보면 최근 단위시설투자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 대처가 필요하며, 어항을 둘러싼 주변정세의 변화에 부응키 위한 어항기능의 다양화, 세분화가 절실했다.

특히 어항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완공항에 대한 적정관리가 가장 긴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그러므로 정부는 어항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과 감독권한만을 갖고 실제업무는 과감하게 전문기관에 이양시킴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어항관리 업무체계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관리업무는 전문기관에 이양해야

두번째 장점으로서는 어항관리를 위한 국가예산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해 어항을 이용하는 사람이 일부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한다면 적어도 어항관리나 유지 보수에 따른 비용은 충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의 통행료나 일반도로에서의 주차료를 징수한다는 논리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이를 징수한다면 자칫 세금으로 오인받을 수도 있으나 어항관리 전담기구가 이를 담당함으로써 사용료의 개념으로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다만 소형선박이라든지, 어민의 부담능력을 감안한 사용료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두말한 나위가 없다.

마지막으로 어항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항개발에 대한 민간자본을 유치, 사용료로 투자비를 상환한 뒤 이를 기부채납토록 함으로써 전적으로 정부예산에만 의존하는 종래의 어항개발 방향에 일대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새해에 개정·공포될 것이 확실시되는 어항법에 어항시설사용료 징수등 어항관리를 위한 규정이 강화 되었다는 사실이다.

현재와 같은 형태로 어업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또한 앞으로 어항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절실하다면 정부로서도 더이상 이를 지체하지 말고 어항시설관리 전담기구 설립이나 관련 민간기구에 대한 업무위탁의 용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실한 어항으로 인하여 직접 피해와 손해를 볼 사람은 다름아닌 우리의 어민이며, 어항관리의 낙후로 타격을 받을 것은 우리의 수산업과 어촌지역사회이기 때문이다. ▲